

예 산 총 칙

2021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691,990,054 | 20,759,702 |
| 일반회계 | 612,201,462 | 18,366,044 |
| 특별회계 | 79,788,592 | 2,393,658 |
| 공기업특별회계 | 41,553,172 | 1,246,595 |
| 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| 41,553,172 | 1,246,595 |
| 기타특별회계 | 38,235,420 | 1,147,063 |
| 의료급여기금운영 | 1,444,448 | 43,333 |
|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| 694,780 | 20,843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| 15,088,416 | 452,652 |
| 농공지구조성사업 | 3,953,045 | 118,591 |
|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| 17,054,731 | 511,642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 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2,650,000천원, 재해·재난 목적 예비비는 5,832,982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,759,702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 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간주하고, 미 집행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하며, 이는 의회에 즉시 보고 한다.